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8. 31	l. / (총 14	[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박 은 정		044-202-1711
전략기획팀	담 당 자	한 연 수		044-202-1714
서울특별시	과 장	김 정 일		02-2113-766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유 효 연		02-2133-7669
인천광역시	단 장	안 광 찬		032-440-7801
코로나19대응 추진단	담 당 자	이 은 실		032-440-7849
경기도	과 장	윤 덕 희	지 된	031-8008-542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최 문 갑	전 화	031-8008-5422
대구광역시	과 장	정 동 호		053-803-5950
사회재 난과	담 당 자	최 익 제		053-803-3112
		신 현 두		044-202-1890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문 달 해		044-202-1883
보상지원팀	담 당 자	민 유 정		044-202-1888
		임 한 숙		044-202-1881

코로LHHOI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조치사항,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응현황 등 -

코로나	바이러	스김	ì염·	중 - 19	중앙	재닌	안전	대책	본부 (본	부장:	정세균	국무
총리)는	오늘	박능	후	1차	장(보	건복	지부 경	상관)	주재료	· 정·	부서울	·청사
영상회:	의실에	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광약	^투 자치	단체의	라 함	게 🔺
코로나1	19 조	치사	항,	▲의	사단	체	집단취	후진	대용	현황	등을	논의
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 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고, 환자와 고령자가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 감염된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력한 실천 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국민 한명 한명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
이번 일주일은 접촉을 최소화 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평생친구

○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도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감염 확산을 차단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코로나19 조치사항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 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 하도록 하였으며, 7월 27일(월)부터는 마스크 착용 지시를 거부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4명에게 각각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하였다.
 - 또한, 의료기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8월 31(월)과 9월 1일(화) 2일간 종합병원 등 8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출입구 관리 등 감염예방관리대책 수립·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 종사자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에서의 감염 예방과 관리를 강화 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는 신속한 접촉자 조사와 격리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10개 지역에서 29개 코로나19 추적조사 지원팀을 확대 운영한다.
 - 한편, 확진자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기 전까지 가정에서 대기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일대일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증상 유무를 수시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평 생 친 구

- 경기도는 어제(8.30.일) 도내 종교시설 7,707개소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다. 대부분의 종교시설이 준수하고 있으나, 대면 예배 실시 등 총 118개소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구광역시는 최근 지역사회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어제 (8.30.일) 긴급 방역대책 전략자문 회의를 개최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 오늘(8.31.월)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열고 방역대책 점검, 사회적 거리 두기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지난 주말(8.29.~8.30.)동안 종교시설 966개소를 집중점검한 결과,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한 1곳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마스크 미착용 등 9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였다.
- □ 관계부처에서도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초·중등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위하여 오늘(8.31.월)부터 9월 11일(금)까지 2주 동안 **'EBS의 온라인 개학'** 콘텐츠를 **모든 유료방송 서비스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난 4월에도 온라인 개학 지원을 위해 유료방송을 통한 EBS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대학·전문대학에 비대면 수업 활용을 권고하는 등 감염 확산을 방지하면서 학사 운영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휴원과 휴교, 부분 등교 등에 따른 아동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시 지원하는 가족 돌봄 비용을 당초 1학기까지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9월 30일 (수)까지 연장하여 지원한다.
 - * 근로자 1인당 1일 5만 원, 최대 10일간(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지원
-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를 통해 수도권 거리 두기 강화 기간인 8월 30일(일)부터 9월 6일(일)까지 보험설계사 등의 대면 영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 집합 교육 금지, 고령충 대상 영업금지, 발열·호흡기 유중상자 즉각 영업 중단 등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하였다.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현재까지 대중교통 내의 마스크 착용 관련하여 총 385건을 수사하였고, 이 중 198건을 기소 송치 하여 6명은 구속하였다.
- 이와 함께, 8월 30일(일)부터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고위험시설, 음식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전문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점검도 지원하고 있다.

















평생친구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5차 개산급(概算給) 및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 기관 1차 손실보상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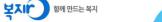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8.28.)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203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약 996억 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한다.
 -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그 잠정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보상은 손실 발생 상황이 종료된 이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염병 대응의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 * (경과 (1차, 4.9.) 1,020억 원 (2차, 5.29.) 1,308억 원 (3차 6.29.) 622억 원 (4차, 7.31.) 1,073억 원
- 이번 5차 개산급을 포함하여 **총 5,019억 원을 지급**하게 되며, 추경 및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 원의 **약 72%를 집행**했다.
 -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74개소)에 **총 3,443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지방** 의료원(36개소)에 **총 1,943억 원**이 지급되었다.
- □ 이번 5차 개산급은 **203개 의료기관** 대상 **총 996억 원** 규모이며, 의료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약 4.9억 원**이다.











평생친구

- 5차 개산급 지급대상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과 선별 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도 포함된다.
- **감염병전담병원 508억 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총 824억 원**을 지급 하며,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07개소에 총 172억 원**을 지급한다.
- * 보건소 등을 제외한 손실보상 대상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57개소 중(8.26일 기준) 진료비 손실이 발생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154개소에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 (47개소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유형으로 보상)
-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됨

< 코로나 19 손실보상 5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개소수, 억원) >

			선별				
구분	총계	소계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	중증환자 입원치료	기타 치료의료	진료소
기관수	203*	96	47	23	59	4	107
지급액	996	824	508	273	496	11	172

- *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보상항목은 ①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7.31일 분까지), ②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7.31일 분까지), ③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이다.
 - 일반환자 감소 손실은 진료비 청구가 완료된 4월분까지 지급하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계속 운영 중인 곳은 재정상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5~7월 예상분의 70%까지 추가 지급한다.
 - *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이 종료된 의료기관의 경우 9월부터 **최복기간 손실** (최대 2개월)과 **소**장례식장, 매점 등 **의료부대사업 손실**도 보상 예정











- □ 이번 8월부터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코로나19 확진환자 방문 등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 대상**이다.
 - *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법 제70조제1항제3호, 4호),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법 제70조제1항제5호),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법 제70조제1항제4호)
- 보상항목은 **①소독 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②**명령 이행 기간 동안의 **진료비 손실**이며,
 - ③ 요양기관의 경우 환자 진료로 인해 의사 또는 약사가 자가격리 되어 휴업한 경우도 휴업기간 동안 진료비 손실을 보상한다.
- 이번 지급대상은 7월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접수한 **627건**(8.26일 기준) 중 손실보상금 **심사가 완료된 35개** 의료기관이며, 지급액은 총 247백만 원이다.
- 이번 손실보상 의료기관 35개소는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명 령 이행 기간이 대부분 5일 이하로 짧다.

< 1차 손실보상 의료기관(35개소)의 명령이행기간 >

전체	0.5일 이상~5일 이하	5일 초과~11일 이하
35개소	29개 소	6개소
(100%)	(83%)	(17%)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폐쇄·업무정지로 인해 손실규모가 컸던 57 개소는 이미 개산급으로 179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7월 27일 이후 접수된 병원급 의료기관은 현재 손실보상금 심사 중이다.











- 손실보상금은 해당 기관에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명령을 내린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개별적으로 안내·접수하고, 중앙사고수습 본부가 직접 청구인에게 지급하다.
 - * 손실보상금 안내·접수 전담부서 지정 완료 시·도 ;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북, 경북, 제주(8.30 기준)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매월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특히 **폐쇄일수가 짧고 1일당 영업손실액이 적어** 손실보상금이 소액 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 아울러,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해 준 의료 기관을 비롯한 모든 관련 기관에 감사드리며, 이번 손실보상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평생 친구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8월 30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28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891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1368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314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8.30)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고발**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 아심밴드를 착용하 사람은 촛 293명이며, 이 중 275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8명이 착용하고 있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59개소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85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 8월 30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회 3만7319개소**, **▲음식점**· 카페 1만9620개소 등 34개 분야 총 7만680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306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6,10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549반, 1,694명)하여 심야 시간 (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 4,229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1,878개소에 대해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하였다.











평생친구

-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 사항
 - 2.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3.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2. 안전하고 쿨~한 여름방학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行)·3금(禁) 수칙 포스터
 - 3. 안전하고 쿸~한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 (行)·3금(禁) 수칙 포스터
 - 4.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 5.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7.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8. 「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 9.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10.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 동거인 생활수칙
 - 16.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7.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평생친구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 수도권 8.19. 0시. 수도권 외 지역 8.23. 0시(학교는 8.26일)부터 시행 수도권 식당·카페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는 8.30일 0시부터 시행 독서실·스터디카페·학원 집한금지 및 교습소 집한제한은 8.31일 ()시부터 시행

목서실·스터니카페·약원 집압금지 및 교급소 집압제안은 8.31일 U지부터 지행 								
구분		조치시						
		수도권	비수도권					
집 협 모임·	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u> </u>		○ 무관중 경기 전환						
	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다중 이용 시설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카페·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10인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 파크, 종교사설 실내 결혼장 공한장 영화만 목욕탕시우나, 멀티방DMD방, 장례식장 ○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이상), 뷔페, PC방 O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이상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피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시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시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교		○ 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8.26~)	O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O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					
기관.	공공	O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	무인원 제한					
기업	민간	O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평생친구

붙임2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 신뢰성 등에 대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산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례 >

< 보건소에서 의도적으로 양성판정 했다는 내용 관련 >



-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뒤 자체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받은 재검**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의 통화를 담은 영상
- 1) 검체 채취는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채취
- 2) 검사 대부분은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검사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
- ☞ 의료진 양심에 따라 진행되며, 의료인의 판단결정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 (8.19. 방대본 브리핑 중)

2020년 8월 17일 월요일

사랑제일교회 장로님과 전도사님 부부가 보건소에서 확진 받고 백백원에서 재검했는데 음성판정 오늘저녁 7시에 나왔습니다

설마설마했는데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건소 검사에서 양성 나오시는분들은 무조건 병원에서 재검 받으세요

-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후 이틀 뒤 병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 1) 두 검사는 모두 동일한 검사기관에서 진행
- 2) 잔여검체 활용 재검 결과 기존과 동일(보건소 검체 양성 병원 검체 음성)
- 3) 양성 판정 후 2일 후 검사한 것으로, 바이러스량 감소에 따른 결과 변화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 : 시대*****)









평생친구

붙임3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하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과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워격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김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충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다.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 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평생친구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